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8월 13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8.18.)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칠승의원)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행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에 따라 검토보고 없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그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